

의안번호	2207287
의 퇴 인	이춘석의원
회 답 일	2025.2.20.
추 계 번호	25D0046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억 3,000만원, 2030년 31억 7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52억 4,700만원(연평균 30억 4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소방업무환경측정 의무화 (안 제15조제1항)	2,930	2,989	3,048	3,109	3,171	15,247	3,049

주: 1. 소방업무환경측정 의무화(안 제15조제1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 되는 경우 19개 시·도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과 현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제1항 (소방업무환경 측정 등)	소방청장은 현장 소방 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·평가하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5조제1항 (소방업무환경 측정 등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의무화되는 경우, 소방청장이 19개 시·도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과 현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의 재량으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실시되고 있으며, 최근 3년(2023~2025년) 동안 연평균 1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공무원 건강, 소방업무환경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을 측정하고 분석·평가 실시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소방청장이 19개 시·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소방업무환경측정을 매년 1회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용역 건수(19건)에 연도별 평균 연구용역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, 최근 3년(2023~2025년)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총 4건이고 1건당 평균 연구용역비용은 2025년 기준 1억 5,118만원으로 추정
 -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적용하여 연도별 평균 연구용역비용 추정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억 3,000만원, 2030년 31억 7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52억 4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연구용역 건수(a, 건)	19	19	19	19	19	—
평균 연구용역비용(b, 만원)	15,420	15,729	16,043	16,364	16,691	—
추가재정소요 (=a×b, 백만원)	2,930	2,989	3,048	3,109	3,171	15,24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소방청장이 19개 시·도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과 현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